

##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 검토보고 -

### 제안이유

- 노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및 기타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 복지관 주요사업을 노인사회교육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보건·재활 등 증진사업, 노인상담·지도사업, 노인자원봉사사업 등으로 정하여 노인종합복지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3조).
- 복지관 운영은 필요시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여 상황변화에 따라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안 제11조)
- 복지관 이용자는 60세 이상으로 함(안 제6조).
- 복지관 이용자에게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료를 징수하고, 일반인으로서 시설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토록 함(안 제7조).

### 참고사항

- 노인복지법 제37조,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예산군 보조금 관리조례,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 □ 검토의견

- 제정하고자 하는 동 조례안은 보건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 인구가 날로 증가일로에 있는 시점에서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기타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 복지관의 사업내용 및 기능, 시설물의 이용범위와 이용료 및 사용료 납부, 그리고 민간위탁 근거와 운영비 보조 등 근거를 정한 내용으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 다만, 조례안 제정이 복지관 설치에 따른 운영에 있어서 군에서 직영을 전제로 하고, 필요할 경우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조항 배열이 되어야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나, 상정된 조례안은 위탁운영을 전제로 하여 나열된 듯한 형태로 보여지므로
    - 안 제6조(시설의 이용 등)와 안 제7조(이용료 및 사용료)는 운영에 관한 총칙적인 조항이므로 위탁관련 조항인 안 제5조보다 앞 조항에 나열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므로 각각 안 제5조, 제6조로 수정하고,
    - 안 제5조(운영)는 안 제7조로 수정하되, 안 제11조(운영비 등 보조)의 내용이 위탁운영시 보조금 지급관련 내용이므로 동 조항에 포함하여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 상기에서와 같이 2개 조항(안 제5조, 제11조)이 1개의 조항으로 통합이 가능함에 따라 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는 각각 안 제11조 내지 제14조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 제정안과 수정의견과의 대비표 : 따로 붙임

## 제정안과 수정의견과의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6조(시설의 이용료) (생략)	제5조(제정안 제6조와 같음)
제7조(이용료 및 사용료) (생략)	제6조(제정안 제7조와 같음)
<p>제5조(운영) ①(생략)          ②(생략)  <u>&lt; 신설 &gt;</u></p> <p>③(생략)</p>	<p>제7조(제정안 제5조와 같음) ①(제정안과 같음)          ②(제정안과 같음)  <u>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u></p> <p>④(제정안 제③항과 같음)</p>
<p>제11조(운영비 등 보조) <u>군수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u></p>	<p><u>&lt; 삭제 &gt;</u></p>
제12조(자체운영규정) (생략)	제11조(제정안 제12조와 같음)
제13조(손해배상) (생략)	제12조(제정안 제13조와 같음)
제14조(준용) (생략)	제13조(제정안 제14조와 같음)
제15조(시행규칙) (생략)	제14조(제정안 제15조와 같음)

##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제249호
----------	-------

제출년월일 : 2005. 10. 10

제출자 : 예산군수

### 제정이유

노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기타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복지관 주요사업을 노인사회교육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보건·재활 등 증진사업, 노인상담·지도사업, 노인자원봉사사업 등으로 정하여 노인종합복지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3조).
- 복지관 운영은 필요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상황변화에 따라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복지관 이용자는 60세 이상으로 함(안 제6조).
- 복지관 위탁 운영시 수탁자에게 보조금을 보조하여 적정하게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참고자료

- 노인복지법 제37조,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예산군조례 제249호

##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기타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복지관은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85-5번지에 둔다.

제3조(사업 및 기능) 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사업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사회교육사업
2. 노인일자리사업
3. 노인보건·재활 등 증진사업
4. 노인상담·지도사업
5. 노인자원봉사사업
6. 기타 군수가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설) 복지관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사무실 및 상담실
2. 강당 및 회의실
3. 체력 단련실
4. 컴퓨터교육실
5. 식당 및 휴게실
6. 기타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5조(운영) ①군수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복지관에는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시설의 장 및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이용 등) ①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예산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시설이용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질환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자
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기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군수는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강당 등 시설의 일부를 일반인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허가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사용이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위반되는 경우
2. 공공질서,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이용료 및 사용료) ①군수는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시설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노인복지사업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중증 장애인
5. 기타 군수가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복지관 설립목적에 맞는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한 이용료 및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이용·사용하지 못하였거나 기타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복지관 이용자의 복지증진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복지관의 시설물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에 대한 건물가액 상당액 이상의 화재보험 계약 및 시설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을 복지관의 운영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2. 제8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기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일체를 훼손 없이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과 시설물 관리실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관련 법규 위반 등 부정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비 등 보조) 군수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①이용자 또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②수탁자 또는 이용·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훼손·멸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고,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이에 상응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예산군 공유 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 법규 발취】

### □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회관 :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교양·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노인휴양소 :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8>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7.30>

1. 법 제32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실비양로 시설 또는 실비노인복지주택
2. 법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
3. 법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4. 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5. 법 제3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보호전문기관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의 부담비율은 보조금의예산 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4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교실 : 60세이상의 자
2. 경로당 : 65세이상의 자
3. 노인휴양소 : 60세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는 자. 다만, 이용인원이 정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교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③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일부개정 2005.6.8 보건복지부령 317호]

[별표 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6조제1항관련)

#### 1. 공통사항

##### 가. 시설의 입지조건

노인휴양소는 노인에게 심신의 휴양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광지·온천지 등에 설치하도록 한다.

##### 나. 시설의 규모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이상이거나 또는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1) 노인복지회관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 (2) 경로당 : 이용정원 20인 이상(읍·면지역의 경우에는 10인 이상)
- (3) 노인교실 : 이용정원 50인 이상
- (4) 노인휴양소 : 이용정원 20인 이상(객실은 10실 이상)

#### 2. 시설기준

구분 시설별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상담실 또는 면회실	집회실 또는 강당	오락실	화장실	물 리 치료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거실 또는 휴게실	전기시설	강의실	휴게실	객실	공 동 목욕장	기타부 대시설
노인 복지 회관	1	1	1	1	1	1	1								
경로 당						1			1	1					
노인 교 실	1					1					1	1			
노인 휴 양 소		1				1							1	1	1

※ 비고

1. 노인복지회관 : 오락실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자정보의 접근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노인교실 : 사무실 및 휴게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의실과 겸용할 수 있다.
3. 노인휴양소
  - 가. 객실에 조리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식당 및 조리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나. 객실에 목욕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공동 목욕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설비기준

구분 \ 시설의종류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설비기준	가. 식당및조리실 조리실 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한다.  나. 오락실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 하여야 한다.  다. 물리치료실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 하기 위한 훈련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거실 또는 휴게실 : 2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가. 강의실 : 33제곱미터 이상 이어야 한다.	가. 객실 :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식당및조리실 냉장고를 비치하여야 하며, 조리실 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공동목욕장 : 남·녀별로 구분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자 격 기 준
노인복지회관시설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상 담 지 도 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5.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설장	상담지도원	강사(외부 강사포함)	물리치료사	사무원	조리원	관리인
노인복지회관	1인	2인이상		1인	1인	1인	1인
노인 교실	1인		1인				
노인 휴양소	1인						1인

※ 비고(상담지도원) : 이용자에 대하여 노인의 건강유지·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는 자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6.8 보건복지부령 317호]

[별표 8]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6조제2항 관련)

1. 급식위생관리(노인복지회관 및 식당이 설치되어 있는 노인휴양소의 경우에 한한다)

가. 시설의 장은 이용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하여야 한다.

나. 전염성질환·화농성창상 등이 있는 자는 이용자의 식사를 조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의 경우에는 수도법 및 먹는 물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이용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2. 운영규정

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그 시설의 운영방법, 이용자의 준수사항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노인복지회관·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의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이용정원 등에 관한 사항
-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3) 이용료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5)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6)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 (7)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

다.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 3. 회계

가.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 기타 시설이 수수한 기부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계리하여야 한다.

## 4. 장부 등의 비치 : 시설에는 다음 각목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재산목록과 그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시설운영(교육)일지

라. 이용노인(회원)명부

마. 예산서 및 결산서

- 바. 수입·지출장부와 그 증빙서류
- 사.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 아. 보고서철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등 관련 문서철
- 자.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및 관계질의서류

5. 사업의 실시 시설의 장은 시설종별로 각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 설 별	시 설 별 운 영 기 준
노인복지회관	(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노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선정·수행하여야 한다. (나) 다음의 사업을 기본사업으로 수행하되 이용대상 노인의 실정과 지역 여건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종류를 가감하거나 별도의 사업을 개발·추진할 수 있다. ①상담·지도 노인의 생활·주택·신상등에 관한 생활상담 및 노인의 질병예방·치료에 관한 건강상담 및 지도 ②취업상담 및 알선 노인에 대한 취업알선 및 취업자의 사후관리 ③기능회복훈련의 실시 노인의 기능회복 또는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되, 물리치료장비는 관할 보건소에 종사하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④교양강좌등의 실시 노인의 교양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의 지도 (다) 거동불편 노인의 생활편의를 위한 서비스등의 제공을 위하여 재가 노인복지시설을 병설·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 지역 특성에 따라 야간이용이 가능한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 로 당	이용노인들이 건전한 사회봉사활동이나 취미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노 인 교 실	주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노인휴양소	휴양노인들의 교양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을 통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도하여야 한다.